

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7. 10. 17 조례 제2879호
일부개정 2019. 4. 10 조례 제3054호
일부개정 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(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, 제11조 및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
본법」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
을 경감하고,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
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4. 10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난임”이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
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
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2. “한방난임치료”란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
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,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
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
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. 단,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.

[본조신설 2019. 4. 10]

제5조(사업추진 등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0>

1.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,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
2. 한방난임치료 상담, 교육 및 홍보
3.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. <개정 2019.
4. 10>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
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[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. 4. 10]

제6조(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 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0>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 <개정 2019. 11. 15>

[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. 4. 10]

제7조(중복지원 제한)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·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.

[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. 4. 10]

제8조(환수)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. 4. 10]

제9조(비밀누설의 금지)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 4. 10>

[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. 4. 10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4. 10 조례 제305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,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7 까지 생략

④8 「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④9 생략

